

공고

기안용지

공고제 15호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보행 1438.5 | (전화번호 430) | 전결규정 | 조항 전결사항 |
| 처리기관 | 제1부시장 | | | |
| 지행일자 | 23.5 | | | |
| 보존년한 | | | | |
| 보조기관 | 보건의사회국장 보건의행정과장 보건의행정계장 / 5 | 기획관리관 예산과장 예산계장 시민과장 문서관리계장 | 회계과장 회계임시계장 | |
| 기안책임자 | 박종삼 | 23.5.14 | 조 | |
| 경유 수신 참조 | 각안참조 | | | |
| 제 목 | 무연분묘 개장 제1안 내부절제 | | | |
| <p>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당 시에서 집행한 무연분묘 및 일반인이 소유자로 이장한 무연분묘가 벽제리묘지에 개장되어 있는바 개장당시도 이미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개장 조치하였던 것으로 수반이 경과하였으나 연무자 가 나타나지 않아 방치상태에 있다.</p> | | | | |

검열
1973.8.12

0201-1-8A

2930

190mm X 260mm 백상지 40g/㎡

1969. 11. 10. 승인

3. 의견상 은 물론 무면분포가 점유한
 보지면적 (약 10만평) 을 재 활용하고자 무면분포를
 개장하여 합동분포를 조성코자 다음 각안 시행코자
 합니다.

가. 응고안 (제2안과 같음)

나. 응고로지출안 (제3안과 같음)

제2안 응고안

서울특별시용역 제 호

| | | |
|-------|----------|------|
| 공고안심사 | 1973.6.8 | 제2안 |
| 심자자 | 법제계장 | 법제계장 |
| 총 | | (인) |

무면분포개장공고

~~서울특별시용역 제 호~~

도시계획사업 ~~을 시행하기 위하여~~ ^{을 시행하기 위하여} 이미 무면분포로 ~~간주하여~~
 별제리보지 에 가 배장된 분포를 정리코자 ~~이래와~~
~~같이 응고하여~~ ^{분포의} ~~면적~~ ^{면적} 은 시고 할것을 배장 및
 보지등에 관한법을 제 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조와
 유정에 의하여 ^안 응고 합니다.

1. 분포소재지 경기도 고양군 별제면 별제리 산 4-1
 산 5, 산 6 일부

2. 신고기간 73.6. ~ 7. (1개월간)

3. 신고장소 별제리보지 사무소 (소재지: 별제리 9441) ^{이문의하기}

4. 기타 ^{상세한것은 당시 보지사무소} ~~바라본~~ 기간 내에 신고치 않은 분포는

강.시.비.시 개장후 합동분포 조성 함다.

293호

공
 고

최재후
발자카

73. 6

서울특별시 양택식

제 3 안 공고료지출안

- 1. 공고료 - 금 九萬천정 ✓
- 2. 지출방법 청구에 의하여 징불함
- 3. 지출비목 보전비 보전키생관리비

보지관리 수수료

| 필요 | 행수 | 단가 | 금액 | 부기 |
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개사 | 30행 | 400 | 48,000 | 단행 2개사 = 48,000 |
| 2개사 | " | 350 | 42,000 | 단행 2개사 = 42,000 |

₩